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용만·박수현·문금주

복기왕 • 박해철 • 강준현

백승아 · 임미애 · 한정애

박지혜 • 박희승 • 이재강

강훈식 • 이정헌 • 최민희

김승원 · 문대림 · 박홍배

이재관 · 김용민 · 김 윤

손명수 • 이수진 • 강유정

안태준 • 민병덕 • 이인영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

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 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 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 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②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		
	용)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		
	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		
	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		
	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		
	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에서 소지한 사람		